지역사랑상품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생활분야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콘텐츠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할인도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사용, 가맹점의 등록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1
1. 지역사랑상품권 알아보기 4
1.1. 지역사랑상품권의 이해 4
1.1.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4
1.1.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5
1.1.3.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6
2.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 8
2.1.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 방법 8
2.1.1.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기 8
2.1.2.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기 10
3.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13
3.1. 가맹점 등록 등 13
3.1.1.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13
3.1.2. 가맹점 준수사항 17

1. 지역사랑상품권 알아보기

1.1. 지역사랑상품권의 이해

1.1.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이란?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1면).

구분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출처 : 전통시장통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누리상품권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사용 및 가맹점 등록 등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1.1.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유효기간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지역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단서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4면].

종류,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

▪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Q.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에는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이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1면).

>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은 <행정안전부 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변경 신고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발행 신고의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 변경 신고의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1.3.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 등의 대체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 지원 등(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7면].

※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대체 지급**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3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 **(예시)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당의 대체 지급**

- 경기도에서는 정책수당(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은 출생아 1명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6조).

  ·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7면).

· 지역 공공 배달앱·쇼핑몰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거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활용을 통한 상품권 활성화 권장

·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부, 시상금·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

2.1.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 방법

2.1.1.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방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발급 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의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경기지역화폐-이용안내-카드 참조>

-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1. 서울사랑상품권을 계좌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서울페이플러스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구매 계좌 등록(본인 명의의 개인용 계좌에 한하여 등록 가능)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계좌 등록 시 상품권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비즈플레이 기존 이용 고객은 별도 계좌 등록 없이 기존 계좌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자주 묻는 질문 참조>
Q-2. 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2.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서비스 중인 시·군을 확인하여 원하는 앱을 내려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기지역화폐-이용안내-모바일 참조).
예시)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 구매방법: 지역상품권 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성남사랑상품권 선택 → 구매하기(가상계좌 입금 or 계좌연결)
<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상품권안내 참조>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휴대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입방법	지참서류	비고
14세 미만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 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신분증(여권) 지참하여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법정대리인 서명을 신청서에 미리 받아야 하며 연락처로 유선 확인 후 판매
14세 이상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구매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 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본인 지참서류 -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14세 미만 경우와 동일	

<출처 :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기업/일자리/경제-의왕사랑 상품권-상품권 안내 참조>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구매한도

▪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200만원(지류형 상품권은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9면].

▹ 필요 시 월간 구매한도와 연간 구매한도를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50만원, 연 300만원

보유한도

▪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예시)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Q. 서울사랑상품권은 얼마나 구매할 수 있나요?
A. 구매한도는 상품권종(자치구·광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통적으로 1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자주 묻는 질문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구매혜택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할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 다만, 다음과 같이 범국가적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10%를 초과하는 할인이 적용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 명절 및 지역 축제·행사 기간

√ 국비 교부 시 별도의 조건을 정한 경우 등

▪ 구매한 상품권의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 시 추가 할인율은 후(後)캐시백 형태로 운영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2.1.2.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1면].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대상		비고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업종별 제한]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등	'24.2.~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위치한 대형 생활잡화점	

※ 제한대상 가맹점 리스트 :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경제-서울페이소식) 및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확인

<출처 : 서울시 중구 홈페이지-분야별안내-경제-소상공인지원-서울중구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본문).

※ **"상품권발행자등"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단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준수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예시) 상품권 재판매

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판매대행점"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예시) 불법환전

Q.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경우 불법환전에 해당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3.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3.1. 가맹점 등록 등

3.1.1.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이란?

▪ "가맹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함)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함)

가맹점 등록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예시) 가맹점 신규등록 방법
Q.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경기지역화폐 신규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맹점 신규등록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 지참한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등록 요청 <출처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고객센터-FAQ 참조>

(예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Q&A

Q.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 가맹점에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고객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에는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페이란? 참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거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8면].

• 원칙: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 예외: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1.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2.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3.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농협 농자재판매장
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거나, 유사업종 가맹점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낮거나, ㉡판매품목·규모·업종형태 등 고려 시 종합소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예시) 부정유통 행위
Q.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 행위이므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안양시-시정소식-새소식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가맹점 재등록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구분	재등록 제한기간	근거조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1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6개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3.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개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4.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1년	
5.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6개월	
6.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년	
7. 위의 4.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과태료의 부과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3.1.2.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
> -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시 제재

과태료의 부과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